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8
----------	-----

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2일, 송정빈 의원 외 18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정빈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별도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일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임.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재 호)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개정(강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제안 배경

-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서울특별시 지하생활 공간 공기질기준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 2개 조항으로 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는 폐지되었음.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조성 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생활공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지하시설로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지하생활공간이 유지하여야 하는 지하공기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2008년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당시 개별 조례로서 역할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고 대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¹⁾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2015년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8년 제16조의3(취약계층의 이용시설 지원 등)을 신설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이후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구성 체계

- 본 조례안은 총 8개(제1조~제8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3조는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규정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안 제4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5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목적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항, '08.5.29 신설

라. 검토의견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기준(이하 “국가기준”이라 함)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국가기준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별표3²⁾)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국가기준 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국가기준이 서울시기준 보다 일부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안 제4조 관련 별표에 이를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여건 및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국가기준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³⁾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2)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

3) 동 조례안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환경 특수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후 더 엄격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안 제5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안 제6조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을 동 조례안에 재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다만, 현재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리 대상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이외(비규제 대상)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안 제6조에 관련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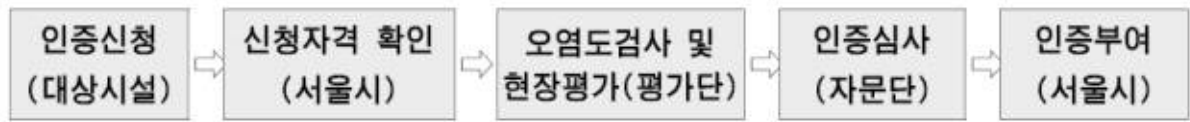
구 분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컨설팅 시설	3,793	364	610	528	512	617	608	554
관리 대상 시설	1,043	121	265	176	204	92	89	96
비규제 대상 시설	2,750	243	345	352	308	525	519	458

*비규제 대상 시설 : 비규제 어린이집·목욕장·실내주차장·실내체육관·경로당·반지하주택

3)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⁴⁾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자발적,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우수시설 인증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을 부여 하고 있음.

4)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도서관



- 2018년까지 총 1,043개소가 인증신청을 하여 최초 429개소가 인증 시설로 지정되었고 이후 자진포기, 인증만료 재평가 탈락, 폐업⁵⁾ 등의 사유로 2019년 현재 인증시설⁶⁾은 322개소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인증시설 현황〉

구 분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인증제 참여	1,043	121	265	176	204	92	89	96
최초 인증시설 선정	429	41	87	64	75	48	47	67
현재 인증시설	322	22	49	53	45	40	46	67

-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시설 선정·유효기간·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자진포기 4개소, 인증만료 재평가 탈락 85개소, 폐업 등 18개소

6) 인증기간 동안 법정 유지·권고기준 자가측정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정기 오염도 검사 제외, 인증마크 부착 및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시설 홍보 혜택이 주어짐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 $\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CO ₂ , ppm)	폼알데하이드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m ³)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들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